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예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1. 9. 2. (목)

제 목 출생신고 되지 않은 65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직권 출생신고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형사제7부(부장검사 이만흠)는 금일(9. 2.) 65세에 이르기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하여 불안정한 법적·사회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음

I 대상자

- A○○ [65세, 무직, 기초생활수급자]

II 사안 경과

- '56. 5. 10. 친모, 경북 김천시에서 대상자 출산 후 출생신고 미필
- '76. 6. 12. 친오빠가 자신의 주거지(서울 강남구)로 전입신고(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)
 - ※ 출생신고 없이 최초 주민등록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 불가
- '21. 7. 20. 서울가정법원, 대상자의 친모 신청으로 '출생확인' 결정
 - ※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의사,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나(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),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의 출생확인이 필요(제44조의2 제1항)
- '21. 7. 26. 대상자 A○○, '직권 출생신고 요청' 취지의 진정서 제출
 - ※ 친모는 위 출생확인 신청 후 결정 전 사망
- '21. 9. 2.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검사 직권 출생신고

○ 관련 법령

- '16. 5. 29.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가족관계등록법') 제46조 제4항은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

관련 조문

[가족관계등록법]

제44조(출생신고의 기재사항)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46조(신고의무자)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.

②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.

○ '출생등록될 권리'는 헌법상 기본권

- 대법원은 「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'출생등록될 권리'를 가진다. 이러한 권리는 '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'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」이라고 판시(대법원 2020. 6. 8.자 2020스575 결정)

○ 검사의 직권 출생신고 필요성

-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보험 혜택 등은 받고 있으나,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관련 증빙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

※ 대상자는 요로협착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고시원 6층에서 생활

-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헌법상 기본권인 '출생등록될 권리'를 가짐에도 부모의 신고의무 해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,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았으나 모친이 사망(부친도 사망)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임

- 이와 같이, 대상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고, 대상자의 불안정한 법적·사회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,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음

▶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친부모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하여 검사가 직권 출생신고를 한 사례는 있으나, 성년에 대한 검사의 직권 출생신고는 최초임 ☑